

# 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8.22.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정정 안내** \_2025.08.22 '청약HOME' 및 '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공합니다.

구분	페이지	내용								비고	
추가선택품목 Premium FURNITURE 1) 드레스룸 STYLE UP	53p	최초	• 옵션 미선택시 침실1과 동일한 <b>바닥 마감과 벽지마감이 시공되고</b> , 시스템선반의 사이즈 및 공간의 크기가 상이합니다.								
	54p	변경	• 옵션 미선택시 침실1과 동일한 <b>바닥 마감</b> 이 시공되고, 시스템선반의 사이즈 및 공간의 크기가 상이합니다.								*오기수정
추가선택품목 Premium FURNITURE 4) 침실3 수납가구	54p	최초	타입	선택형(유상)	품목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026.05.12	잔금(80%) 입주지정일	비고	
			122B	선택1	불박이장 (JUNIOR)	1,550,000	155,000	155,000	1,240,000		
			선택1	불박이장 (KIDS)	1,550,000	155,000	155,000	1,240,000			
	55p	변경	타입	선택형(유상)	품목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026.05.12	잔금(80%) 입주지정일	비고	
122B			선택1	불박이장 (JUNIOR)	1,550,000	155,000	155,000	1,240,000	*오기수정		
		선택2	불박이장 (KIDS)	1,550,000	155,000	155,000	1,240,000				
추가선택품목 Premium KITCHEN 1) 주방 STYLE UP	56p	최초	타입	선택형(유상)	품목 구성						
	122A	선택2	와이드 다이닝	- 다이닝 특화 : 와이드 다이닝 및 <b>홈카페형 장식장</b>							
57p	변경	타입	선택형(유상)	품목 구성					*오기수정		
122A	선택2	와이드 다이닝	- 다이닝 특화 : 와이드 다이닝 및 <b>포켓형 히든 홈바 장식장</b>								
기타사항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87p	최초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주식회사 신영피에프브이제3호			대방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세교로 59-36, 2층 20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11층(마곡동, 대방빌딩)						
	사업자등록번호	810-86-01507			128-81-73455						
88p	변경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사업주체의 변경이 아닌 신영pfv3호 외 1인의 누락된 1인 명기		
		상호	주식회사 신영피에프브이제3호			대방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세교로 59-36, 2층 20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11층(마곡동, 대방빌딩)					
		사업자등록번호	810-86-01507			128-81-73455					
				<b>(주)신영</b>							
			<b>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14층 1401호(삼성동, 아셈타워)</b>								
			<b>120-81-52188</b>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33-0554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경기도 양주시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5.08.22.(금)	25.09.01.(월)	25.09.02.(화)		25.09.03.(수)	25.09.10.(수)	25.09.19.(금)~ 25.09.21.(일)	25.09.22.(월)~ 25.09.24.(수)

1

##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sales.g-well.co.kr/yjdg/>)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8.22.(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 정	25.09.01.(월)	25.09.02.(화)		25.09.03.(수)	25.09.10.(수)	25.09.19.(금)~ 25.09.21.(일)	25.09.22.(월)~ 25.09.24.(수)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61-2)</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양주시는 2025.4.29.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2024.5.17.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가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은 부동산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기재금액) 기준으로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5.09.10.)로부터 6개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시 공동주택과-5655호(2025.08.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152번지 일원(양주 덕계공업지구 특별계획구역 복합용지 2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39층 10개동 총 1,595세대 중 일반분양 1,355세대

[특별공급 608세대(기관추천 104세대, 다자녀가구 134세대, 신혼부부 240세대, 노부모부양 38세대, 생애최초 9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sup>2</sup>,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370	01	049.9922	49	49.9922	17.9588	67.9510	31.9485	99.8995	17.9754	64	6	6	14	1	5	32	32	-
	02	084.9740A	84A	84.9740	30.1927	115.1667	54.3048	169.4715	30.5535	575	57	57	132	17	51	314	261	19
	03	084.9870B	84B	84.9870	30.3266	115.3136	54.3133	169.6269	30.5583	300	30	30	69	9	27	165	135	9
	04	084.8338C	84C	84.8338	29.8382	114.6720	54.2156	168.8876	30.5032	110	11	11	25	3	9	59	51	4
	05	122.8858A	122A	122.8858	41.4978	164.3836	78.5329	242.9165	44.1853	153	-	15	-	4	-	19	134	5
	06	122.8925B	122B	122.8925	41.6410	164.5335	78.5374	243.0709	44.1877	153	-	15	-	4	-	19	134	5
합 계										1,355	104	134	240	38	92	608	747	42

•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는 총 공급세대(1,355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 ×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주거전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지지분 면적 합산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분양 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동·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

(단위: 세대, 원)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층별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 (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지정일
										'26.05.12	'26.10.12	'27.04.12	'27.10.12	'28.04.12	'28.09.12	
49	64	20~29층	24	84,108,000	241,892,000	-	326,000,000	5,000,000	11,3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114,100,000
		30층 이상	40	85,140,000	244,860,000	-	330,000,000	5,000,000	11,5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115,500,000
84A	575	2층	19	128,742,000	370,258,000	-	499,000,000	5,000,000	19,95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174,650,000
		3층	19	131,580,000	378,420,000	-	510,000,000	5,000,000	20,5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78,500,000
		4층	19	135,966,000	391,034,000	-	527,000,000	5,000,000	21,35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184,450,000
		5~9층	95	138,804,000	399,196,000	-	538,000,000	5,000,000	21,9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88,300,000
		10~19층	190	140,094,000	402,906,000	-	543,000,000	5,000,000	22,15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190,050,000
		20~29층	143	141,642,000	407,358,000	-	549,000,000	5,000,000	22,45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192,150,000
		30층 이상	90	142,932,000	411,068,000	-	554,000,000	5,000,000	22,7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193,900,000
84B	300	2층	9	128,484,000	369,516,000	-	498,000,000	5,000,000	19,9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174,300,000
		3층	9	131,580,000	378,420,000	-	510,000,000	5,000,000	20,5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78,500,000
		4층	9	135,708,000	390,292,000	-	526,000,000	5,000,000	21,3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84,100,000
		5~9층	45	138,546,000	398,454,000	-	537,000,000	5,000,000	21,85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87,950,000
		10~19층	90	139,836,000	402,164,000	-	542,000,000	5,000,000	22,1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89,700,000
		20~29층	83	141,384,000	406,616,000	-	548,000,000	5,000,000	22,4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191,800,000
		30층 이상	55	142,674,000	410,326,000	-	553,000,000	5,000,000	22,65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193,550,000
84C	110	2층	4	126,936,000	365,064,000	-	492,000,000	5,000,000	19,6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72,200,000
		3층	4	130,032,000	373,968,000	-	504,000,000	5,000,000	20,2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176,400,000
		4층	4	134,160,000	385,840,000	-	520,000,000	5,000,000	21,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82,000,000
		5~9층	20	136,998,000	394,002,000	-	531,000,000	5,000,000	21,55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185,850,000
		10~19층	40	138,288,000	397,712,000	-	536,000,000	5,000,000	21,8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87,600,000
		20~29층	26	139,836,000	402,164,000	-	542,000,000	5,000,000	22,1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89,700,000
		30층 이상	12	141,126,000	405,874,000	-	547,000,000	5,000,000	22,35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191,450,000



122A	153	2층	5	172,364,991	490,577,281	49,057,728	712,000,000	5,000,000	30,6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249,200,000	
		3층	5	176,480,447	502,290,503	50,229,050	729,000,000	5,000,000	31,45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255,150,000
		4층	5	182,048,417	518,137,803	51,813,780	752,000,000	5,000,000	32,6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263,200,000
		5~9층	25	185,921,788	529,162,011	52,916,201	768,000,000	5,000,000	33,4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268,800,000
		10~19층	50	187,616,388	533,985,102	53,398,510	775,000,000	5,000,000	33,75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271,250,000
		20~29층	36	189,553,073	539,497,207	53,949,720	783,000,000	5,000,000	34,150,000	78,300,000	78,300,000	78,300,000	78,300,000	78,300,000	78,300,000	78,300,000	274,050,000
		30층 이상	27	191,489,758	545,009,311	54,500,931	791,000,000	5,000,000	34,55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276,850,000
122B	153	2층	5	171,638,734	488,510,242	48,851,024	709,000,000	5,000,000	30,450,000	70,900,000	70,900,000	70,900,000	70,900,000	70,900,000	70,900,000	248,150,000	
		3층	5	175,754,190	500,223,464	50,022,346	726,000,000	5,000,000	31,3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254,100,000	
		4층	5	181,322,160	516,070,764	51,607,076	749,000,000	5,000,000	32,45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262,150,000	
		5~9층	25	184,953,445	526,405,959	52,640,596	764,000,000	5,000,000	33,2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267,400,000
		10~19층	50	186,890,131	531,918,063	53,191,806	772,000,000	5,000,000	33,6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270,200,000
		20~29층	36	188,826,816	537,430,168	53,743,016	780,000,000	5,000,000	34,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273,000,000
		30층 이상	27	190,763,501	542,942,272	54,294,227	788,000,000	5,000,000	34,4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275,800,000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 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본 사업의 사업부지 및 건설예정인 건물은 사업주체에서 부가가치세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받아 대지비를 산정하였으며, 같은 타입의 세대별로 대지비분은 같더라도 대지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사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49.9922	084.9740A	084.9870B	084.8338C	122.8858A	122.8925B
약식 표기	49	84A	84B	84C	122A	122B

####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여 청약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가전 등) 공급금액 미포함 기준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시 안내된 사업계획에 변경이 없을 경우,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법령, 행정관청의 규제, 지적 정리사업, 확정측량 및 사업시행 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증감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시 안내된 사업계획에 변경이 없을 경우,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실측정리,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 등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공급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청약 및 계약 시에는 반드시 단지 내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사업지 주변현황(개발현황 등)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 등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 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s://sales.g-well.co.kr/yjdg/>)에 표기된 주택형별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49	84A	84B	84C	122A	122B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경기도	1	10	5	2	-	-	18
		서울특별시	1	10	5	2	-	-	18
		인천광역시	-	8	4	1	-	-	13
	국가유공자		1	9	5	2	-	-	17
	장기복무제대군인		1	6	3	1	-	-	11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		1	6	3	1	-	-	11
	중소기업근로자		1	8	5	2	-	-	1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3	29	15	6	8	8	69
	서울, 인천 거주자(50%)	3	28	15	5	7	7	65
신혼부부 특별공급		14	132	69	25	-	-	24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7	9	3	4	4	38
생애최초 특별공급		5	51	27	9	-	-	92
<b>합 계</b>		<b>32</b>	<b>314</b>	<b>165</b>	<b>59</b>	<b>19</b>	<b>19</b>	<b>608</b>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공통사항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li> <li>-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li> <li>-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li> </ul>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p>-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p> <p>-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p> <p>-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p>-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구분</b></p> <p style="text-align: center;">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p>	<p style="text-align: center;"><b>처리방법</b></p> <p style="text-align: center;">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p>
	<p style="text-align: center;">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p>	<p style="text-align: center;">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형(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p>
	<p style="text-align: center;">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모두 부적격 처리</p>
무주택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양주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위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상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5.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0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li> </ul>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li> <li>■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li>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li> <li>■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3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li> </ul> </li> <li>■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li> <li>- 자녀수에 태어나 입양한 자녀도 포함됨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 (경기도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 해당 시·도에서 경쟁 발생시 해당주택건설지역(양주시) 거주자를 우선 선정합니다.]</li> <li>※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시 및 인천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경기도 거주 신청자에게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li> </ul> </li> </ul>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양주시 거주자) →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li> <li>■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li> <li>■ ①소득구분</li> </ul> <table border="1" data-bbox="309 536 2130 991">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2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10%)</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2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0%)</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양주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②순위</li> </ul> <table border="1" data-bbox="309 1171 2130 1321"> <thead> <tr> <th>순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2순위</td> <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양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li> </ul>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기준</li> <li>-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li> <li>*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li> </ul>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8.22.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2025.8.1.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2025.3.31. 시행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49호)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2025.6.21.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9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li> <li>■ <b>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li> <li>※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b>1순위에 해당하는 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b>12개월</b>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li> </ul>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양주시)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8.22.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주택 외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단독주택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li> <li>■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li> <li>-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양주시 및 경기도</th> <th style="width: 25%;">서울특별시</th> <th style="width: 25%;">인천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li> </ul>				구분	양주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분	양주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li> <li>-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li> <li>-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li> </ul> </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양주시)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li> <li>■ ②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구분</th> <th style="width: 25%;">가점제</th> <th style="width: 25%;">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이하</td> <td>40%</td> <td>60%</td> </tr>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40%</td> <td>60%</td> </tr> <tr> <td>전용면적 85㎡ 초과</td> <td>-</td> <td>100%</td> </tr> </tbody> </table> </li></ul> <li>-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li>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b>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b>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 외국인 직계존속</p> <p>-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p>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p>-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p> <p>-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p>-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p> <p>-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비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li> <li>*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li> </ul>														
비고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li> <li>-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li> </ul>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5.09.01.(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li> <li>• (정보취약계층) 견본주택 접수 :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61-2 ☎ 1533-0554</li> </ul>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 양주시 거주자	25.09.02.(화) 09:00~17:30		
	2순위	기타지역 : 수도권 거주자	25.09.03.(수) 09:00~17:30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 견본주택(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61-2)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b>인감증명 방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본인서명확인 방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b>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 </ul>	
<p><b>공고단지 청약연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li> <li>-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 <li>- <b>이용방법</b>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p><b>당첨자발표 서비스</b></p>	<p>청약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b>조회기간</b> : 2025.09.10.(수) ~ 2025.09.19(금) (10일간)</li> <li>-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li>-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p>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공일시</b> : 2025.09.10.(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b>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li> <li>-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안내

구분	대상자	서류 제출 기간	접수 장소
내용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25.09.19.(금)~09.21.(일) 10:00~17:00	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 건본주택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61-2)

유의 사항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 유형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 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 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포기 의사로 간주합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당첨자) 자격확인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특별공급 확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약서	-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특별공급 신청서 : 인터넷 청약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여권정보증명서 ※재외동포: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 신청(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인감도장 또는 서명	본인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대리서명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본인 및 세대원 모두 뒷자리 전부표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 신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li> </ul>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li> </ul>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p>[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p>
	○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기간 25년이상 명시)</li> </ul>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li> <li>※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li> <li>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li> <li>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li> </ul>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li> </ul>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li> </ul>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li> </ul>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li> </ul>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li> <li>※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담당의사명, 의사면허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의 경우(당사 건본주택에 비치)</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의 경우</li> </ul>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li> </ul>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li> <li>※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li> </ul>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li> </ul>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li> <li>•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상세"로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li> </ul>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li> <li>※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담당의사명, 의사면허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의 경우(당사 건본주택에 비치)</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의 경우</li> </ul>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배우자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li> <li>※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gt;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를 화면 인쇄)</li> <li>•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ul>
	○	부동산 건물(주택포함)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li> <li>•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이 확인 될 경우 제출</li> </ul>
	○	부동산 가격 증명 서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li> <li>•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제출</li> <li>※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li> <li>- 토지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li> <li>- 공동주택/단독주택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가격 열람 / 단독주택가격 열람</li> <li>- 기타 건축물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li> </ul>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구)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li> </ul>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li> </ul>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세대주의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li> </ul>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li>-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확인</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li> <li>※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li>- 당점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li> </ul>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li> <li>*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li>•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li> <li>※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li> </ul>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li> </ul>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점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li> </ul>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점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점자 또는 당점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점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li> </ul>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를 화면 인쇄)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건물(주택포함)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이 확인 될 경우 제출
	○	부동산 가격 증명 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제출 ※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 - 토지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공동주택/단독주택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가격 열람 / 단독주택가격 열람 - 기타 건축물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구)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담당의사명, 의사면허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필수)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청약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온라인 발급 및 본인발급용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당첨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업주체에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의 연봉/근로계약서(직인 날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홈택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 ② 소득금액증명원 ③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홈택스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가입자만 인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③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⑤ 해당 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세무서, 해당 직장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① 세무서, 해당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전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농업인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 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 직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인해 전년도 소득관련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추가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해당 대상입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구 분	해당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 직장,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납부내역증명 포함/종합소득세 납부자)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③ 해당 직장, 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여권정보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 신청(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인감도장 또는 서명	본인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대리서명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혼인관계여부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본인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의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사실증명서		※ 본인 및 피부양 직계존비속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및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기간 25년이상 명시)</li> </ul>
가점제 당첨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li> <li>•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li> <li>•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li> </ul> ※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li> <li>-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청약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제출</li> </ul>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온라인발급 및 본인발급용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업주체에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비고
당첨자 계약 체결	25.09.22.(월) ~ 25.09.24.(수) 10:00 ~ 16:00	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 견본주택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61-2)	※ 특별공급/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동·호수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공지예정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광주은행	1127-020-344257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 결제 불가)
- ※ 분양대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건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 '101-101홍길동')
-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계약자의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기 납부한 계약금, 약정납부일 이전 선납할인 적용받은 중도금 및 잔금 등 명목을 불문한 일체의 대금에 관하여, 사업주체에게 반환 요청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에「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본인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건본주택에서 계약금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수입인지(인지세)	-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연대하여 균등 납부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에「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및 본인발급용으로 제출
	○		위임장	-	• 상기 장소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리접수 불가)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 기간 내에 소명을 한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보다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만 한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한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납부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아래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은 거소요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이증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한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혼인특례 및 출산특례 적용시 제외)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임을 증명하는 경우엔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사업주체 비치)" 작성을 통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표시하여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봄.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와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참여시 부적격 처리됨.

■ **투기적발자 처벌 -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 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 됩니다.



##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분양사무소(건본주택)는 중도금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 및 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
-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은 계약일 이후 사업주체, 시공사와 합의 후 별도 지정됩니다.
-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사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와 대출취급기관이 별도 협약한 대출 만기일까지이며,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일 전일까지 **이자후불제**로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일부터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과 관련하여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일 전일까지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신 선납부(대납)하며(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별도의 승계 없이 은행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선납부(대납)하고,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 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사전협의를 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총 분양대금의 5% 완납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총 분양대금의 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계약금을 완납하더라도 일정시점 이후 납입시점에 따라 금융기관 한도부족 등의 사유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의 사유로 중도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계약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의 중도금 집단대출은 사업주체에 의해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알선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중도금 집단대출 금융기관 알선이 시행되는 경우,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분양사무소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의 대출을 신청하지 않거나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체와 무관한 계약자의 대출 결격사유(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융보증서 미발급, 금융제도변경 등),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기준 미달 등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계약자별 대출금액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직접 납부한 중도금과 대출은행에 신청한 중도금이 중복 납부 시 계약자가 직접 납부한 중도금은 환불처리 되며, 이에 따른 선납 및 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자께서는 인지하고, 대출금융기관이관련법규 변경 등으로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계약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아 대출금융기관의 대위변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전액상환 또는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은행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에

-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 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b>검색대상</b>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b>주택의 범위</b>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b>주택처분 기준일</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li> <li>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li> <li>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li> <li>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li> </ol> </li> </ol> </li> <li>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li> </ol>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b>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li> </ol>

보는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분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분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
		계약시	2026.05.12	입주지정일
49	6,800,000	680,000	2,720,000	3,400,000
84A	12,300,000	1,230,000	4,920,000	6,150,000
84B	11,800,000	1,180,000	4,720,000	5,900,000
84C	11,700,000	1,170,000	4,680,000	5,850,000
122A	17,300,000	1,730,000	6,920,000	8,650,000
122B	19,300,000	1,930,000	7,720,000	9,65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광주은행	1127-020-344279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합니다.  
(예시 101동 301호 경우, 입금자명을 '101-301홍길동'으로 기재)
-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의 중도금, 잔금 납부일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지정된 납부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으로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별도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부분적인 확장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분양주택 발코니 확장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마감재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공급안내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에 따른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본 공사 시 세부 마감 및 디테일 개선에 따라 형태 및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설치 여부 및 위치, 개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없는 발코니에서는 물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천장 또는 벽에 노출될 수 있고,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해 턱이 생길 수 있어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①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②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에는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③비확장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④비확장 세대의 주방발코니 상부는 배관 노출 및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⑤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비확장) 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⑥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일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⑦비확장 세대의 거실 우물천장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⑧비확장 세대의 경우 유리난간이 시공되지 않으며, 일부 구간에 철제난간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⑨단위세대 설계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감안하여 발코니 확장을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하거나 그 후 개별적인 발코니 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이 없고,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①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함으로써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입주자에게 불편을 일으킬 수 있음에 대해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민원발생시 민원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사업주체가 사용검사 후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계약자가 발코니 창틀을 개별시공 설치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결로 및 민원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④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시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 별도의 행위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발코니 확장 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상하좌우)가 비확장 세대일 경우 비확장부분과 접한 확장 세대 내의 부분의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확장세대는 천장형에어컨 위치(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우물천장 깊이, 커튼상자 깊이, 등박스 위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되고, 천장 높이 일부가 낮아질 수 있으며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타입별로 마감적용부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고,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주동 조합의 형태에 따른 인접 세대 간의 벽체 및 단열재의 위치가 상이하며, 이로 인하여 동일 유형세대에도 발코니의 유효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 평형이라도 동·호수에 따라 확장 구간의 폭과 깊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사용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비확장 세대의 배수관이 확장 세대의 거실 또는 침실 천장 내부에 설치됨으로써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외부 전면창 설치 및 확장에 따른 냉·난방비 상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에너지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는 외관구성,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창호의 개폐방향 및 분할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시공품질,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창호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벽체 및 천장이 분양카탈로그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실제 사용가능한 발코니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될 수 있으며, 연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외부환경 요인(우천, 강풍 등)에 따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며, 기본형(비확장 세대)은 확장형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11 추가선택 품목**

■ 추가선택 품목

(1) 시스템에어컨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제조사	선택안	설치대수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05.12	입주지정일	
49	삼성	1안	2대	거실+침실1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삼성	2안	3대	거실+침실1+침실2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84 A/B/C	삼성	1안	2대	거실+침실1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삼성	2안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900,000	590,000	590,000	4,720,000	
	삼성	3안	5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84㎡A타입만 해당
122 A/B	삼성	1안	3대	거실+주방+침실1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삼성	2안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8,100,000	810,000	810,000	6,480,000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 선택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84m<sup>2</sup>A 타입 세대는 주방 STYLE UP 옵션사항 중 [선택2] 와이드 다이닝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파룸을 포함하여 시스템에어컨 5대 설치 옵션(3안) 선택이 가능하며, 84m<sup>2</sup>A 이외의 타입에서는 해당 옵션(3안) 선택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에는 스탠드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배관, 침실1에는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배관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입니다. 또한,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확장옵션 선택 시 설치가능하며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유상옵션 선택 유무,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옵션선택 완료 후 임의로 에어컨 및 실외기를 추가 설치하여 냉방기능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관해서는 하자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계약 후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옵션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수량 및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동일 주택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감지기 위치, 조명기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제조사	설치대수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05.12	입주지정일	
84A/B/C, 122A/B	삼성	1	드레스룸	1,240,000	124,000	124,000	992,000	

-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 선택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 유상옵션은 84m<sup>2</sup>(A, B, C), 122m<sup>2</sup>(A, B)타입에 해당하신 분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는 상기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선택 옵션에 따른 설치 공간의 면적에 따라 제습 능력이 상이하며, 제습기를 설치하였더라도 습기로 인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천장형 제습기 작동에 따른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해당 실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조명기구, 스프링클러, 환기구 등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 사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 등 관리가 필요하며, 소모품 교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자동으로 배수되는 타입으로, 배수배관이 매립되어 설치되고 배수로 인한 약간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 옵션 선택시, 천장형 제습기에 대한 전기설비, 설비배관이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3) 주방가전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구분	선택안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05.12	입주지정일	
전타입	전기쿡탑	1안	삼성	NZ63DB657CAWS[BS]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2안	LG	BEI3ANHLBIE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3안	LG	BEI3ASB4BIE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전기오븐	1안	삼성	NQ36A6555CK	450,000	45,000	45,000	360,000	
		2안	LG	MZ385EBTA	410,000	41,000	41,000	328,000	
84 A/B/C 122 A/B	식기세척기	1안	삼성	DW80F71Y1SEW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2안	LG	DIE6PT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 주방가전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 선택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가전제품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가전제품의 색상 및 모델은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계약자의 취향에 따른 색상 및 모델사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전 유상옵션은 상기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본제공 및 옵션을 포함한 모든 가전제품은 제조사 사정(품질, 품귀, 단종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사양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옵션의 경우 식기세척기 도어는 가구마감과 동일한 패널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전기쿡탑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제조사 : ㈜경동나비엔/GRB-5003)이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사이즈는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은 전기쿡탑 옵션 선택의 유무에 따라 주방 혹은 주방 다용도실 내 노출형으로 시공되며, 타입마다 설치위치가 상이하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 옵션품목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해당 위치에 수납공간이 제공됩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유상옵션 품목들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 등으로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유상옵션 품목들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가전제품의 추후 시공을 고려한 전기콘센트 및 전기 차단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하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냉장고패키지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구분	선택안	제조사	품목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05.12	입주지정일	
49	냉장고패키지 (2D)	1안	삼성	- 1도어형 냉장고(냉장, 냉동)	3,930,000	393,000	393,000	3,144,000	
		2안	LG	- 냉장고장	3,630,000	363,000	363,000	2,904,000	
84 A/B/C 122 A/B	냉장고패키지 (3D)	1안	삼성	- 1도어형 냉장고(냉장, 냉동, 김치)	5,900,000	590,000	590,000	4,720,000	
		2안	LG	- 냉장고장 및 수납 키큰장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 냉장고패키지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 선택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냉장고패키지 유상옵션은 상기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삼성제품의 경우, 본공사 납품 전 납품가능한 색상 중 계약자의 선택에 따른 색상의 냉장/냉동/김치 냉장고 제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LG제품의 경우,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색상 및 모델사양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적용색상 : 미스트베이지)
- 모든 가전제품 옵션은 제조사 사정(품질, 품귀, 단종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등급 이상의 사양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삼성 냉장고 패키지 옵션의 경우 냉동고(RZ34C7965AP[7865AP]), 냉장고(RR40C7995AP[7895AP]), 김치냉장고(RQ34C7945AP[7845AP])로 구성됩니다.
- LG 냉장고 패키지 옵션의 경우 냉동고(BC1F2AA), 냉장고(BC1L2AA), 김치냉장고(BC1K3AA)로 구성됩니다.
- 냉장고 패키지 옵션의 경우 타입별 금액이 상이하므로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형에 따라 디테일 및 가구 형태, 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도어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품목의 개폐 방향은 견본주택과 동일하며,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냉장고는 주방에 인접한 위치에 김치냉장고가 우선 배치되며, 냉장고를 정면에 두고 좌측 냉동실, 우측 냉장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배치 순서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패키지 옵션 선택에 따라 냉장고장 및 수납키큰장의 구성이 변경되며, 형태 및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소유하신 냉장고/김치냉장고 사이즈에 따라 해당 공간에 설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일반 냉장고의 경우 냉장고 설치 공간보다 돌출됩니다.
- 냉장고패키지 옵션 미선택시에는 일반 스탠드형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의 사이즈를 감안하여 벽지마감의 공간과 상부장이 제공되며, 특화수납장(팬트리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122B타입 : 냉장고 설치 이외의 키큰장은 일반수납장으로 제공)
- 옵션 선택에 따라 콘센트 설치 수량 및 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인테리어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

• Premium ENTRANCE

1) 현관 STYLE UP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선택형(유상)	품목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05.12	입주지정일	
49	선택1	(자동) 3연동 현관중문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선택2	(수동) 3연동 현관중문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84A	선택1	(자동) 3연동 현관중문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선택2	(수동) 3연동 현관중문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선택3	현관창고 고급형 벽판넬 시스템선반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84B	선택1	(자동) 3연동 현관중문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선택2	(수동) 3연동 현관중문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선택3	현관창고 고급형 벽판넬 시스템선반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84C	선택1	(자동) 1S/D 현관중문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선택2	(수동) 1S/D 현관중문	900,000	90,000	90,000	720,000	
	선택3	현관창고 고급형 벽판넬 시스템선반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122A	선택1	(자동) 3연동 현관중문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선택2	(수동) 3연동 현관중문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선택3	현관창고 고급형 벽판넬 시스템선반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122B	선택1	(자동) 3연동 현관중문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선택2	(수동) 3연동 현관중문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선택3	현관창고 고급형 벽판넬 시스템선반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 현관 STYLE UP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 선택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현관 중문은 본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열이나 기밀, 차음과 같은 기능성 제품이 아닌 공간분리/시야차단이 목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STYLE UP 미선택 시 현관 중문 및 중문틀(레일박스 포함)이 설치되지 않고 해당 공간의 몰딩, 걸레받이, 날개벽등 디테일이 상이합니다.
- 현관중문 옵션 선택 시, 통행 유효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건립세대를 확인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중문(자동)을 선택할 경우 무선스위치 위치 및 출입센서의 위치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옵션은 타입에 따라 중문의 형태가 다르므로 각 타입별 형태를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STYLE UP 미선택시 현관창고 내부에는 포스트 타입의 시스템선반과 벽지로 마감되며 선반의 개수와 사이즈, 내부공간의 크기는 옵션유무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
- 옵션선택 유무에 따라 접합부의 가구 및 디딤판, 마루의 디테일이 상이하며 스프링클러, 조명, 환기구 등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선택1] (자동) 3연동 현관중문, [선택2] (수동) 3연동 현관 중문을 중복선택할 수 없습니다.
- [선택3]은 중복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1] (자동) 3연동 현관중문, [선택2] (수동) 3연동 현관 중문 중 택1하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 Premium LIVING

1) 와이드 리빙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선택형(유상)		품목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05.12	입주지정일	
49	선택1	알파룸형	와이드 리빙(거실 확장) + 양개형 슬라이딩 도어 + 고급형 매입등 ※거실바닥 마감 옵션 연계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선택2	드레스룸형	와이드 리빙(거실 확장) + 1슬라이딩 도어 + 시스템선반 (일반형 포스트 타입, 드레스룸형) + 드레스룸 직부등 ※거실바닥 마감 옵션 연계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	-----	-------	---	-----------	---------	---------	---------	--

- 와이드리빙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 선택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슬라이딩도어는 제작품으로 본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열이나 기밀, 차음과 같은 기능성 제품이 아닌 공간분리/시야차단이 목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옵션 선택 시 슬라이딩 레일은 노출형으로 설치되어 바닥에 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해당 옵션 선택 시 침실에 제공되는 옵션형 침실등을 별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침실 내 등기구 및 시스템에어컨의 위치는 실의 가로폭 중앙에 배치되어, 유상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해당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STYLE UP\_타입] 옵션 선택 시 와이드리빙형 선택 유무에 따라 옵션 적용 구간이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공급금액이 상이하므로 해당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옵션 유무에 따라 몰딩, 걸레받이, 커튼박스의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환기구 및 스프링클러등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패밀리 라운지

타입	선택형(유상)	품목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05.12	입주지정일	
84C/122B	선택1	침실2 양개형 슬라이딩 도어 + 고급형 매입등 ※거실바닥 마감 옵션 연계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 패밀리 라운지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 선택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슬라이딩도어는 제작품으로 본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열이나 기밀, 차음과 같은 기능성 제품이 아닌 공간분리/시야차단이 목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옵션 선택 시 슬라이딩 레일은 노출형으로 설치되어 바닥에 턱이 생길 수 있으나, 견본주택 건립세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옵션 선택 시 침실에 제공되는 옵션형 침실등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으며, 거실과 동일한 매입등이 설치됩니다.
- 침실 내 등기구 및 시스템에어컨의 위치는 실의 가로폭 중앙에 배치되어, 유상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해당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옵션 유무에 따라 몰딩, 걸레받이, 커튼박스의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배선기구/스위치/환기구/스프링클러등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Premium FURNITURE

1) 드레스룸 STYLE UP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선택형(유상)		품목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05.12	입주지정일	
84A	선택1	일반형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 드레스룸 고급형 벽판넬 시스템선반 + 조명형 거울 ※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미포함	4,570,000	457,000	457,000	3,656,000	

	선택2	의류관리기형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 드레스룸 고급형 벽판넬 시스템선반 + 조명형 거울 ※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해당공간 선반 삭제)	4,570,000	457,000	457,000	3,656,000	
84B	선택1	일반형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 드레스룸 고급형 벽판넬 시스템선반 + 조명형 거울 ※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미포함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드레스룸1 적용
	선택2	의류관리기형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 드레스룸 고급형 벽판넬 시스템선반 + 조명형 거울 ※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해당공간 선반 삭제)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드레스룸1 적용
84C	선택1	일반형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 드레스룸 고급형 벽판넬 시스템선반 + 조명형 거울 ※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미포함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선택2	의류관리기형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 드레스룸 고급형 벽판넬 시스템선반 + 조명형 거울 ※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해당공간 선반 삭제)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타입	선택형 (무상)	선택형(유상)		품목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05.12	입주지정일	
122A	파우더 분리형	선택1	일반형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드레스룸 고급형 벽판넬 시스템선반 ※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미포함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선택2	의류관리기형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드레스룸 고급형 벽판넬 시스템선반 ※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해당공간 선반 삭제)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파우더 통합형	선택1	일반형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드레스룸 고급형 벽판넬 시스템선반 + 조명형 거울 + 드레스룸 내부 벽 일부 시트판넬 마감 ※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미포함	5,750,000	575,000	575,000	4,600,000	
		선택2	의류관리기형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드레스룸 고급형 벽판넬 시스템선반 + 조명형 거울 + 드레스룸 내부 벽 일부 시트판넬 마감 ※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해당공간 선반 삭제)	5,750,000	575,000	575,000	4,600,000	
122B	파우더 분리형	선택1	일반형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드레스룸 고급형 벽판넬 시스템선반 ※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미포함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선택2	의류관리기형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드레스룸 고급형 벽판넬 시스템선반 ※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해당공간 선반 삭제)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파우더 통합형	선택1	일반형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드레스룸 고급형 벽판넬 시스템선반 + 조명형 거울 + 드레스룸 내부 벽 일부 시트판넬 마감 ※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미포함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선택2	의류관리기형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드레스룸 고급형 벽판넬 시스템선반 + 조명형 거울 + 드레스룸 내부 벽 일부 시트판넬 마감 ※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해당공간 선반 삭제)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 드레스룸 STYLE UP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 선택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본으로 드레스룸 내부에는 포스트 타입의 시스템선반이 설치되며, 의류관리기 설치가 예상되는 공간에 2구 콘센트가 설치되며 위치는 개별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옵션 미선택시 침실1과 동일한 바닥 마감이 시공되고, 시스템선반의 사이즈 및 공간의 크기가 상이합니다.
- 드레스룸 STYLE UP 옵션의 [선택1], [선택2]는 중복 선택 불가능하며, 선택형에 따라 배선기구, 환기구, 조명 등의 위치가 상이합니다.
- [선택2]의 의류관리기 설치공간은 소유하신 의류관리기에 맞추어 개별변경은 불가합니다. (벽면 도배마감)
-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는 본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열이나 기밀, 차음과 같은 기능성 제품이 아닌 공간분리/시야차단이 목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옵션 선택 시 슬라이딩 레일은 노출형으로 설치되어 바닥에 턱이 생길 수 있으니, 견본주택 건립세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옵션 유무에 따라 몰딩, 걸레받이, 커튼박스의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배선기구/스위치/환기구/스프링클러등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옵션 선택 시 84B는 드레스룸1에만 옵션이 적용됩니다.

2) 침실1 수납가구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선택형(유상)	품목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05.12	입주지정일	
49	선택1	불박이장 (JUNIOR)	1,550,000	155,000	155,000	1,240,000	
	선택2	불박이장 (KIDS)	1,550,000	155,000	155,000	1,240,000	
84 A/C	선택1	침실1 수납형 슬라이딩도어 불박이장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122 A/B	선택1	침실1 수납형 슬라이딩도어 불박이장	5,200,000	520,000	520,000	4,160,000	

- 침실 수납가구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 선택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해당 옵션의 [선택1], [선택2]는 중복 선택 불가능합니다.
- 해당 옵션 선택시 침실의 사이즈가 줄어들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 내 등기구 및 시스템에어컨의 위치는 실의 가로폭 중앙에 배치되며, 유상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해당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침실2 수납가구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선택형(유상)	품목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05.12	입주지정일	

84 A/B/C	선택1	불박이장 (JUNIOR)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선택2	불박이장 (KIDS)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122A	선택1	불박이장 (JUNIOR)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선택2	불박이장 (KIDS)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 침실 수납가구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 선택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해당 옵션의 [선택1], [선택2]는 중복 선택 불가능합니다.
- 침실 내 등기구 및 시스템에어컨의 위치는 실의 가로폭 중앙에 배치되며, 유상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해당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옵션의 가구 형태는 견본주택 건립세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선택형에 따라 설치되는 배선기구/스위치/환기디퓨저/스프링클러등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옵션 선택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옵션 유무에 따라 몰딩, 걸레받이의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환기구 및 스프링클러등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침실3 수납가구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선택형(유상)	품목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05.12	입주지정일	
84 A/B	선택1	불박이장 (JUNIOR)	1,260,000	126,000	126,000	1,008,000	
	선택2	불박이장 (KIDS)	1,260,000	126,000	126,000	1,008,000	
84C	선택1	드레스룸 가구 도어 + 드레스룸 시스템선반(일반형 포스트 타입) + 드레스룸 직부등	1,550,000	155,000	155,000	1,240,000	
122A	선택1	불박이장 (JUNIOR)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선택2	불박이장 (KIDS)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122B	선택1	불박이장 (JUNIOR)	1,550,000	155,000	155,000	1,240,000	
	선택2	불박이장 (KIDS)	1,550,000	155,000	155,000	1,240,000	

- 침실 수납가구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 선택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해당 옵션의 [선택1], [선택2]는 중복 선택 불가능합니다.
- 침실 내 등기구 및 시스템에어컨의 위치는 실의 가로폭 중앙에 배치되며, 유상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해당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옵션의 가구 형태는 견본주택 건립세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선택형에 따라 설치되는 배선기구/스위치/환기디퓨저/스프링클러등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옵션 선택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옵션 유무에 따라 몰딩, 걸레받이의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배선기구/스위치/환기구/스프링클러등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침실4 수납가구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선택형(유상)	품목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05.12	입주지정일	

122B	선택1	불박이장 (JUNIOR)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선택2	불박이장 (KIDS)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 침실 수납가구 유상옵선은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 선택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해당 옵션의 [선택1], [선택2]는 중복 선택 불가능합니다.
- 침실 내 등기구 및 시스템에어컨의 위치는 실의 가로폭 중앙에 배치되며, 유상옵선 선택 유무에 따라 해당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옵션의 가구 형태는 견본주택 건립세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선택형에 따라 설치되는 배선기구/스위치/환기디퓨저/스프링클러등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옵션 선택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옵션 유무에 따라 몰딩, 걸레받이의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배선기구/스위치/환기구/스프링클러등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Premium KITCHEN

1) 주방 STYLE UP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선택형(유상)		품목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05.12	입주지정일	
49	선택1	고급형 주방	- 상부장 특화 : 조명형 플랩상부장 및 독립형 후드, 상부장 간접조명, 센서형 수전, 고급형 미드웨이 ACC, 주방TV(13인치) - 조명 특화 : 작업대 라인조명, 다이닝 매입등 - 아일랜드 특화 : 바카운터형 아일랜드, 아일랜드 하부장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84A	선택1	고급형 주방	- 상부장 특화 : 조명형 플랩상부장 및 독립형 후드, 상부장 간접조명, 센서형 수전, 고급형 미드웨이 ACC, 주방TV(13인치) - 조명 특화 : 작업대 라인조명, 다이닝 트랙 조명, 고급형 매입보조등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선택2	와이드 다이닝	- 상부장 특화 : 조명형 플랩상부장 및 독립형 후드, 상부장 간접조명, 센서형 수전, 고급형 미드웨이 ACC, 주방TV(13인치) - 조명 특화 : 작업대 라인조명, 다이닝 트랙 조명, 고급형 매입보조등 - 다이닝 특화 : 와이드 다이닝 및 홈카페형 장식장 - 수납 특화 : 주방 팬트리 가구 도어, 팬트리 시스템선반 (일반형 포스트타입)	9,200,000	920,000	920,000	7,360,000	
84B	선택1	고급형 주방	- 상부장 특화 : 조명형 플랩상부장 및 독립형 후드, 상부장 간접조명, 센서형 수전, 고급형 미드웨이 ACC, 주방TV(13인치) - 조명 특화 : 작업대 라인조명, 다이닝 트랙 조명, 고급형 매입보조등 - 다이닝 특화 : 아일랜드 작업대 확장 및 홈카페형 장식장, 팬트리 수납장	9,400,000	940,000	940,000	7,520,000	



84C	선택1	고급형 주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부장 특화 : 조명형 플랩상부장 및 독립형 후드, 상부장 간접조명, 센서형 수전, 고급형 미드웨이 ACC, 주방TV(13인치)</li> <li>- 조명 특화 : 작업대 라인조명, 다이닝 매입등, 고급형 매입보조등</li> </ul>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선택2	와이드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부장 특화 : 조명형 플랩상부장, 상부장 간접조명, 센서형 수전, 고급형 미드웨이 ACC, 주방TV(13인치)</li> <li>- 조명 특화 : 작업대 라인조명, 다이닝 매입등, 고급형 매입보조등</li> <li>- 아일랜드 특화 : 와이드 아일랜드 및 독립형 후드</li> </ul>	무상옵션	-	-	-	
122A	선택1	고급형 주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부장 특화 : 조명형 플랩상부장 및 독립형 후드, 상부장 간접조명, 센서형 수전, 고급형 미드웨이 ACC, 주방TV(13인치)</li> <li>- 조명 특화 : 작업대 라인조명, 다이닝 트랙 조명, 고급형 매입보조등</li> </ul>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선택2	와이드 다이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부장 특화 : 조명형 플랩상부장 및 독립형 후드, 상부장 간접조명, 센서형 수전, 고급형 미드웨이 ACC, 주방TV(13인치)</li> <li>- 조명 특화 : 작업대 라인조명, 다이닝 트랙 조명, 고급형 매입보조등</li> <li>- 다이닝 특화 : 와이드 다이닝 및 포켓형 히든 홈바 장식장</li> <li>- 수납 특화 : 주방 팬트리 가구 도어, 팬트리 시스템선반 (일반형 포스트타입)</li> <li>- 패밀리룸 및 패밀리룸 슬라이딩 도어, 고급형 매입등 제공</li> </ul>	10,200,000	1,020,000	1,020,000	8,160,000	
122B	선택1	고급형 주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부장 특화 : 조명형 플랩상부장 및 독립형 후드, 상부장 간접조명, 센서형 수전, 고급형 미드웨이 ACC, 주방TV(13인치)</li> <li>- 조명 특화 : 작업대 라인조명, 다이닝 매입등, 고급형 매입보조등</li> </ul>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선택2	와이드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부장 특화 : 조명형 플랩상부장, 상부장 간접조명, 센서형 수전, 고급형 미드웨이 ACC, 주방TV(13인치)</li> <li>- 조명 특화 : 작업대 라인조명, 다이닝 매입등, 고급형 매입보조등</li> <li>- 아일랜드 특화 : 와이드 아일랜드 및 독립형 후드</li> <li>- 수납 특화 : 포켓형 히든 홈바 장식장, 멀티팬트리형 키큰장</li> </ul>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 주방 STYLE UP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 선택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해당 옵션은 전기쿡탑 옵션 선택 시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 식탁등 위치는 평면상 최적의 위치로, 임의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 기본으로 제공되는 주방가구 마감재는 견본주택 공용홀에 비치된 기본형 주방가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타입별로 형태, 크기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면에 부착되는 ACC 위치 및 길이는 타입별 상이하며, 옵션미선택시 공용홀에 비치된 기본형 ACC가 설치되고 그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 주방 상판/벽 옵션 선택형에 따라 설치되는 주방가구의 형태 및 사이즈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옵션 선택형에 따라 몰딩, 걸레받이의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배선기구/스위치/환기구/스프링클러등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명 STYLE UP 옵션 미선택 시 84C/122B의 주방 천장 루버판넬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판/벽 마감\_세라믹 타일] 미선택 시 84C/122B의 와이드 아일랜드 옵션 선택 불가능합니다.

2) 주방 상판/벽 마감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선택형(유상)		품목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05.12	입주지정일	
49	선택1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STYLE UP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적용	1,140,000	114,000	114,000	912,000	
			고급형 주방 옵션 선택 시		1,420,000	142,000	142,000	1,136,000	
	선택2	유럽산 세라믹 타일	주방 STYLE UP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상판/벽 유럽산 세라믹 타일 마감 적용	2,190,000	219,000	219,000	1,752,000	
			고급형 주방 선택 시		2,530,000	253,000	253,000	2,024,000	
84A	선택1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STYLE UP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적용	2,160,000	216,000	216,000	1,728,000	
			고급형 주방 / 와이드 다이닝 선택 시		2,760,000	276,000	276,000	2,208,000	
	선택2	유럽산 세라믹 타일	주방 STYLE UP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상판/벽 유럽산 세라믹 타일 마감 적용	4,250,000	425,000	425,000	3,400,000	
			고급형 주방 / 와이드 다이닝 선택 시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84B	선택1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STYLE UP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적용	3,070,000	307,000	307,000	2,456,000	
			고급형 주방 선택 시		3,580,000	358,000	358,000	2,864,000	
	선택2	유럽산 세라믹 타일	주방 STYLE UP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상판/벽 유럽산 세라믹 타일 마감 적용	5,850,000	585,000	585,000	4,680,000	

			고급형 주방 선택 시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84C	선택1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STYLE UP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적용	1,960,000	196,000	196,000	1,568,000	
			고급형 주방 선택 시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선택2	유럽산 세라믹 타일	주방 STYLE UP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상판/벽 유럽산 세라믹 타일 마감 적용	3,900,000	390,000	390,000	3,120,000	
			고급형 주방 선택 시		4,580,000	458,000	458,000	3,664,000	
			와이드 아일랜드 선택 시		7,910,000	791,000	791,000	6,328,000	
	122A	선택1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STYLE UP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적용	5,020,000	502,000	502,000	4,016,000
고급형 주방 / 와이드 다이닝 선택 시				5,560,000		556,000	556,000	4,448,000	
선택2		유럽산 세라믹 타일	주방 STYLE UP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상판/벽 유럽산 세라믹 타일 마감 적용	5,790,000	579,000	579,000	4,632,000	
			고급형 주방 / 와이드 다이닝 선택 시		6,460,000	646,000	646,000	5,168,000	
122B	선택1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STYLE UP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적용	4,480,000	448,000	448,000	3,584,000	
			고급형 주방 선택 시		5,130,000	513,000	513,000	4,104,000	
	선택2	유럽산 세라믹 타일	주방 STYLE UP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상판/벽 유럽산 세라믹 타일 마감 적용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고급형 주방 선택 시		5,910,000	591,000	591,000	4,728,000	
			와이드 아일랜드 선택 시		5,520,000	552,000	552,000	4,416,000	

- 주방 상판/벽 마감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 선택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주방 상판/벽 마감 유상 옵션 미선택 시 상판은 MMA, 벽은 타일 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주방 상판/벽 마감 유상 옵션은 타입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 본공사 시 MMA, 엔지니어드스톤, 세라믹타일의 이음매가 노출되며 이음매 및 나누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제작시기에 따라 컬러 및 패턴이 다소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타일/상판/측판에 대한 줄눈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줄눈의 변경으로 인해 디자인이 모델하우스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 및 옵션선택형 별 제공되는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실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형에 따라 마감재 두께가 상이하므로, 가구 디테일 및 상세 사이즈/조명/환기디퓨저/스프링클러 등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84C/122B 와이드아일랜드 유상옵션 선택시에는 유럽산 세라믹 타일만 선택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remium BATH

1) 욕실 STYLE UP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선택형 (무상)	선택형 (유상)	품목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05.12	입주지정일		
49	공용욕실 (욕조형)	선택1	- 욕실벽 600x600 대형 타일 마감 (욕조측면 포함) - 하부장 일체형 세면대 및 아메리칸 스탠다드 위생기구 (비데일체형 양변기, 세면수전, 욕조수전) 적용 - 욕실 ACC(수건걸이, 수건선반, 휴지걸이) 고급형 니켈 무광 마감 - 상부장 간접조명	2,850,000	285,000	285,000	2,280,000		
	공용욕실 (샤워부스형)	선택1	- 욕실벽 600x600 대형 타일 마감 - 하부장 일체형 세면대 및 아메리칸 스탠다드 위생기구 (비데일체형 양변기, 세면수전, 샤워수전) 적용 - 욕실 ACC(수건걸이, 휴지걸이) 및 샤워부스 고급형 니켈 무광 마감 - 상부장 간접조명	2,850,000	285,000	285,000	2,280,000		
84 A/B/C	공용욕실 (욕조형)	선택1	공용욕실	- 욕실벽 600x600 대형 타일 마감 (욕조측면 포함) - 하부장 일체형 세면대 및 아메리칸 스탠다드 위생기구 (비데일체형 양변기, 세면수전, 욕조수전) 적용 - 욕실 ACC(수건걸이, 수건선반, 휴지걸이) 고급형 니켈 무광 마감 - 상부장 간접조명	5,250,000	525,000	525,000	4,200,000	
			부부욕실	- 욕실벽 600x600 대형 타일 마감 - 하부장 일체형 세면대 및 아메리칸 스탠다드 위생기구 (비데일체형 양변기, 세면수전, 샤워수전) 적용 - 욕실 ACC(수건걸이, 휴지걸이) 및 샤워부스 고급형 니켈 무광 마감 - 상부장 간접조명					
	공용욕실 (샤워부스형)	선택1	공용/부 부욕실	- 욕실벽 600x600 대형 타일 마감 - 하부장 일체형 세면대 및 아메리칸 스탠다드 위생기구 (비데일체형 양변기, 세면수전, 샤워수전) 적용 - 욕실 ACC(수건걸이, 휴지걸이) 및 샤워부스 고급형 니켈 무광 마감 - 상부장 간접조명	5,600,000	560,000	560,000	4,480,000	

타입	선택형(유상)	품목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05.12	입주지정일		
122A	선택1	공용욕실	- 욕실벽 600x600 대형 타일 마감 - 하부장 일체형 세면대 및 아메리칸 스탠다드 위생기구 (비데일체형 양변기, 세면수전, 샤워수전) 적용	5,320,000	532,000	532,000	4,256,000	

			- 욕실 ACC(수건걸이, 휴지걸이) 및 샤워부스 고급형 니켈 무광 마감 - 상부장 간접조명					
		부부욕실	- 욕실벽 600x600 대형 타일 마감 (욕조측면 포함) - 아메리칸 스탠다드 위생기구 (비데일체형 양변기, 세면기 및 세면수전, 욕조수전) 적용 - 욕실 ACC(수건걸이, 수건선반, 휴지걸이) 고급형 니켈 무광 마감 - 조명형 거울					
122B	선택1	공용욕실	- 욕실벽 600x600 대형 타일 마감 - 하부장 일체형 세면대 및 아메리칸 스탠다드 위생기구 (비데일체형 양변기, 세면수전, 샤워수전) 적용 - 욕실 ACC(수건걸이, 휴지걸이) 및 샤워부스 고급형 니켈 무광 마감 - 상부장 간접조명	5,860,000	586,000	586,000	4,688,000	
		부부욕실	- 욕실벽 600x600 대형 타일 마감 (욕조측면 포함) - 아메리칸 스탠다드 위생기구 (비데일체형 양변기, 세면기 및 세면수전, 욕조/샤워수전) 적용 - 욕실 ACC(수건걸이, 수건선반, 휴지걸이) 및 샤워부스 고급형 니켈 무광 마감 - 조명형 거울					

타입	선택형(유상)	품목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05.12	입주지정일	
49	선택2	복합환풍기 (1개소)	570,000	57,000	57,000	456,000	
84 A/B/C 122 A/B	선택2	복합환풍기 (2개소)	1,140,000	114,000	114,000	912,000	

- 욕실 STYLE UP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 선택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욕실 STYLE UP 옵션 미선택 시 49타입 욕실 및 84, 122타입의 공용욕실에는 비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전 타입 욕실 STYLE UP 미선택 시 벽타일, 도기/수전류 및 ACC는 마감재리스트에 표기된 제품이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 전 타입 욕실 STYLE UP은 공용욕실, 부부욕실 개별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전 타입 욕실 STYLE UP은 품목구성 내 개별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49, 84타입의 공용욕실 욕조/샤워부스형은 무상선택형으로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 49, 84타입의 공용욕실 무상선택형에 따라 도기/수전/욕실ACC 위치와 상부장의 크기가 변경되며, [공용욕실-욕조형]은 모델하우스 건립세대 84A타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욕실 STYLE UP 옵션의 [선택1], [선택2]는 중복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형에 따라 배선기구, 환기구, 조명 등의 위치가 상이합니다.
- 전 타입 선택형에 따라 타일 나누기도는 변경되며, 바닥의 배수의 원활함을 위하여 바닥 타일 나누기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배수구의 위치 및 형태는 욕실마다 상이하며, 그 위치는 사용상 편의에 따라 본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점검구 위치는 본공사시 변경되거나 유지관리를 위하여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욕조 및 샤워부스는 제작품으로 본공사시 입찰 결과에 따라 형태와 디테일, 부속품의 형태가 다소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고, 사용상 최적의 위치에 배치되므로 개별 위치선택이 불가합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형 욕실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무선리모콘으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 욕실복합환풍기의 설치위치는 주택형에 따라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인 경우에도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선택시 욕실당 1개소 설치하며, 설치 가능한 욕실은 49타입 1개소, 84, 122타입 2개소입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선택시 설치 모델은 휴젠뜨3 기본형 FHD3-C150P이며, 제조사 사정(품질, 품귀, 단종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사양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조명기구 등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Premium STYLING

1) 거실 STYLE UP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선택형 (유상)	품목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05.12	입주지정일		
49	선택1	와이드 리빙 미선택 시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 거실 아트월 대형타일 (600X1,200) - 거실/복도 시트판넬 및 픽처레일 - 아트월/소파뒷벽 구간 간접조명							
		와이드 리빙 선택 시		700,000	70,000	70,000	560,000		
84A	선택1	와이드 다이닝 미선택 / 선택 시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84B	선택1	고급형 주방 미선택 시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 거실 아트월 대형타일 (600X1,200) - 거실/복도 시트판넬 및 픽처레일 - 아트월/소파뒷벽 구간 간접조명							
		고급형 주방 선택 시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84C	선택1	현관 중문 옵션 미선택 / 선택 시	패밀리 라운지 미선택 시	와이드 아일랜드 미선택 시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 거실/복도 아트월 대형타일 (600X1,200) - 거실/복도 시트판넬 및 픽처레일 - 거실/복도 아트월 구간 간접조명					
				와이드 아일랜드 선택 시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 거실/복도 아트월 대형타일 (600X1,200)					

					- 거실/복도 시트판넬 및 픽처레일 - 주방 세라믹 벽 픽처레일 - 거실/복도 아트월 구간 간접조명					
			패밀리 라운지 선택 시	와이드 아일랜드 미선택 시	- 거실/복도 아트월 대형타일 (600X1,200) - 거실/복도 시트판넬 및 픽처레일 - 거실/복도 아트월 구간 간접조명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패밀리 라운지 선택 시	와이드 아일랜드 선택 시	- 거실/복도 아트월 대형타일 (600X1,200) - 거실/복도 시트판넬 및 픽처레일 - 주방 세라믹 벽 픽처레일 - 거실/복도 아트월 구간 간접조명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122A	선택1	와이드 다이닝 미선택 시			- 거실 아트월 대형타일 (600X1,200) - 거실/복도 시트판넬 및 픽처레일	2,550,000	255,000	255,000	2,040,000	
		와이드 다이닝 선택 시			- 아트월/소파뒷벽 구간 간접조명	2,050,000	205,000	205,000	1,640,000	
122B	선택1	패밀리 라운지 미선택 시		와이드 아일랜드 미선택 시	- 거실/복도 아트월 대형타일 (600X1,200) - 거실/복도 시트판넬 및 픽처레일 - 거실/복도 아트월 구간 간접조명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와이드 아일랜드 선택 시	- 거실/복도 아트월 대형타일 (600X1,200) - 거실/복도 시트판넬 및 픽처레일 - 주방 세라믹 벽 픽처레일 - 거실/복도 아트월 구간 간접조명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패밀리 라운지 선택 시		와이드 아일랜드 미선택 시	- 거실/복도 아트월 대형타일 (600X1,200) - 거실/복도 시트판넬 및 픽처레일 - 거실/복도 아트월 구간 간접조명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와이드 아일랜드 선택 시	- 거실/복도 아트월 대형타일 (600X1,200) - 거실/복도 시트판넬 및 픽처레일 - 주방 세라믹 벽 픽처레일 - 거실/복도 아트월 구간 간접조명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 거실 STYLE UP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 선택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해당 옵션 미선택시 아트월은 기본형(600\*600)타일, 복도 및 창호 하부벽은 거실벽지로 시공되며 시공되는 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옵션 선택 시 시트 판넬 적용 구간 내에 한하여 픽처레일이 일부 설치되며, 유상옵션 계약서에 표기된 구간 이외에 추가 설치는 불가합니다.
- 해당 옵션 타입별로 판매가가 상이하므로 옵션 선택시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옵션 선택시 부착면의 평활도확보 및 패널의 두께에 의해 실내 안목면적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해당 옵션 선택시 벽체타일, 시트판넬 구간은 걸레받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아트월 대형타일 및 시트 판넬의 사이즈, 나누기도, 메지의 두께 및 디테일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트판넬 마감은 자재 특성 상 부착을 위한 시공 흔적이 일부 발생하며, 이는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해당 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픽처레일에는 별도의 와이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해당 옵션 선택형에 따라 몰딩, 걸레받이의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배선기구/스위치/환기구/스프링클러등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공간선택 추가옵션에 따라 마감재 부착위치가 상이하며, 계약시 해당 공간별 마감재 부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바닥 STYLE UP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선택형 (유상)	품목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05.12	입주지정일		
49	선택1	와이드 리빙 미선택 / 선택 시		- 광폭 강마루 (전 구간)	180,000	18,000	18,000	144,000	
	선택2	와이드 리빙 미선택 시		- 포세린타일 600X600 (거실/복도/주방 바닥)	1,040,000	104,000	104,000	832,000	
		와이드 리빙 선택 시		- 광폭 강마루 (침실 바닥)	1,340,000	134,000	134,000	1,072,000	
84A	선택1	와이드 다이닝 미선택 / 선택 시		- 광폭 강마루 (전 구간)	360,000	36,000	36,000	288,000	
	선택2	와이드 다이닝 미선택 시		- 포세린타일 600X600 (거실/복도/주방 바닥)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와이드 다이닝 선택 시		- 광폭 강마루 (침실 바닥)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84B	선택1	고급형 주방 미선택 / 선택 시		- 광폭 강마루 (전 구간)	360,000	36,000	36,000	288,000	
	선택2	고급형 주방 미선택 / 선택 시		- 포세린타일 600X600 (거실/복도/주방 바닥) - 광폭 강마루 (침실 바닥)	1,850,000	185,000	185,000	1,480,000	
84C	선택1	패밀리 라운지 미선택 / 선택 시	와이드 아일랜드 미선택 / 선택 시	- 광폭 강마루 (전 구간)	360,000	36,000	36,000	288,000	
	선택2	패밀리 라운지 미선택 시	와이드 아일랜드 미선택 / 선택 시	- 포세린타일 600X600 (거실/복도/주방 바닥) - 광폭 강마루 (침실 바닥)	1,850,000	185,000	185,000	1,480,000	
		패밀리 라운지 선택 시	와이드 아일랜드 미선택 / 선택 시	- 광폭 강마루 (침실 바닥)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122A	선택1	와이드 다이닝 미선택 / 선택 시		- 광폭 강마루 (전 구간)	500,000	50,000	50,000	400,000	
	선택2	와이드 다이닝 미선택 시		- 포세린타일 600X600 (거실/복도/주방 바닥) - 광폭 강마루 (침실 바닥)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와이드 다이닝 선택 시		- 포세린타일 600X600 (거실/복도/주방 바닥) - 광폭 강마루 (침실 바닥)	2,850,000	285,000	285,000	2,280,000	
122B	선택1	패밀리 라운지	와이드 아일랜드	- 광폭 강마루 (전 구간)	500,000	50,000	50,000	400,000	



	미선택 / 선택 시	미선택 / 선택 시						
선택2	패밀리 라운지 미선택 시	와이드 아일랜드 미선택 / 선택 시	- 포세린타일 600X600 (거실/복도/주방 바닥) - 광폭 강마루 (침실 바닥)	2,750,000	275,000	275,000	2,200,000	
	패밀리 라운지 선택 시	와이드 아일랜드 미선택 / 선택 시		3,160,000	316,000	316,000	2,528,000	

- 바닥 STYLE UP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 선택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해당 옵션 선택 시 타입 별로 시공 부위 및 판매가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카달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 [선택1]은 전 구간 광폭 강마루가 시공됩니다.
- [선택2]은 복도, 거실, 주방에 타일이 시공되며, 침실은 광폭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달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옵션 선택 시 사용상 부주의에 따른 낙상사고 발생에 유의해야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가구가 설치되는 부위는 별도의 바닥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타일 나누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타일과 강마루가 만나는 경계에는 재료분리대가 시공됩니다.
- 공간별 특화옵션 선택형에 따라 바닥마감 부위 및 디테일이 상이하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조명 STYLE UP

타입	선택형 (유상)	품목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05.12	입주지정일	
49	선택1	와이드 리빙 미선택 시 - 거실 고급형 매입등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침실1,2 간접 검용 고급형 등기구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와이드 리빙 선택 시 - 거실 고급형 매입등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침실1 간접 검용 고급형 등기구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84A	선택1	와이드 다이닝 미선택 시 - 거실 고급형 매입등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침실1,2,3,알파룸 간접 검용 고급형 등기구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와이드 다이닝 선택 시 - 거실 고급형 매입등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침실1,2,3 간접 검용 고급형 등기구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84B	선택1	- 거실 고급형 매입등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침실1,2,3 간접 겸용 고급형 등기구					
84C	선택1	패밀리 라운지 미선택 시	- 거실 고급형 매입등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주방 천장 루버판넬 - 침실1,2,3 간접 겸용 고급형 등기구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패밀리 라운지 선택 시	- 거실 고급형 매입등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주방 천장 루버판넬 - 침실1,3 간접 겸용 고급형 등기구	2,090,000	209,000	209,000	1,672,000	
122A	선택1	와이드 다이닝 미선택 시	- 거실 고급형 매입등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침실1,2,3,4 간접 겸용 고급형 등기구	2,050,000	205,000	205,000	1,640,000	
		와이드 다이닝 선택 시	- 거실 고급형 매입등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침실1,2,3 간접 겸용 고급형 등기구	2,050,000	205,000	205,000	1,640,000	
122B	선택1	패밀리 라운지 미선택 시	- 거실 고급형 매입등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주방 천장 루버판넬 - 침실1,2,3,4 간접 겸용 고급형 등기구	2,550,000	255,000	255,000	2,040,000	
		패밀리 라운지 선택 시	- 거실 고급형 매입등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주방 천장 루버판넬 - 침실1,3,4 간접 겸용 고급형 등기구	2,550,000	255,000	255,000	2,040,000	

- 조명 STYLE UP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 선택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주방의 옵션형 조명은 주방 STYLE UP 옵션 선택 시 적용됩니다.
- 해당 옵션 선택 시 타입별 금액/수량/위치가 상이하므로 옵션 선택 시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Premium FURNITURE 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등기구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설치공간의 높이, 크기, 디테일은 본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광주은행	1127-020-344279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납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초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추가선택품목 선택품목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선택품목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3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301홍길동'으로 기재)
-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기준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비확장시 선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입주시 개별 납부)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가전 및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구 옵션 등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일정, 납부방법, 선택타입,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상기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약은 발코니확장 옵션 선택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 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동등 사양의 제품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고 기능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제품 추가선택품목은 세대 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가전 및 가구 도어의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로 아트월,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상부장, 시트판넬 등 색상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타 주택형의 색상 등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타일 등의 특성상 무늬,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해당 공사의 발주 및 착수 이후 추가선택품목의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공사비는 추가선택품목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각 유상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 불가합니다.
- 욕실 STYLE UP 옵션 선택 시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시 욕실 벽/바닥 타일의 나누기 및 상세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등 욕실가구의 제조사, 색상, 규격 형태 등 상세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형 복합환풍기 옵션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형 욕실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천장형 복합환풍기 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욕실복합환풍기는 무선리모콘으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유선스위치는 배기기능만 가능함)
- 욕실 천장형 복합환풍기 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욕실복합환풍기의 설치 위치는 49타입의 경우 공용욕실에 1개소 설치되며, 84, 122타입은 공용욕실과 부부욕실 2개소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본공사 시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조명 STYLE UP 선택시 제공되는 마감재 및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스펙,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거실/조명 STYLE UP 옵션은 디밍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는 타입별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 유상 옵션 선택 시 설비배관, 전기배관, 유선리모콘이 설치되고, 옵션 미선택 시 배관 및 유선리모콘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무상선택형 및 옵션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 배전기구(스위치, 콘센트)의 스펙, 위치, 수량,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미선택 시 하부장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추가선택품목 금액은 거실스탠드, 안방 벽걸이 에어컨 설치용 냉매배관 및 콘센트(안방 벽걸이용 에어컨)을 미시공하는 조건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위치는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와 기타 세대 내 조건 등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및 기타 가전제품의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기 선정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편의상 난방방용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입주자 개별 에어컨 설치용 냉매매립배관(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이 설치되고, 냉매매립박스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정한 위치로 설치되며, 해당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성능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옵션 선택 실에만 장비 및 배관이 설치됩니다. (옵션 미선택 실에는 장비 및 배관 미설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수량에 해당하는 무선리모콘을 제공하고, 유선 컨트롤러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월패드와 연동을 통해 제어가 가능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운전 또는 실외기에 의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구분	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공고문에 미기재 및 오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li> <li>•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에 따라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li> <li>• 청약 및 계약 전 사업지를 방문하시어 주변 환경(혐오시설 위치, 도로, 소음, 일조, 조망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li>•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연결녹지, 학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주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으로 인한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li> <li>•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주택건설사업은 양주시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도로 및 녹지, 체육공원의 부지 및 설치비용 일부를 기부채납 할 예정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사항이 변동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li> <li>•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li> <li>• 사업 부지면적, 대지 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 정리 결과 또는 사업계획승인 변경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li> <li>• 대지 경계 및 면적이 최종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 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 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li> <li>• 본 공사 시 천재지변, 자연재해, 문화재 발견 및 정부의 정책에 의해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제시된 내용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 면적은 법적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외벽, 문주 등 외부특화 및 마감 계획은 인허가 및 시공 여건·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양주시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디자인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각종 홍보물(모형도, CG 등)은 인쇄상 오류 및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상 상충 부분이 있을 시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신청 전 반드시 현장여건, 주변 유해시설, 마감재리스트,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일부 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의 귀책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를 포함한 인근 기반시설 계획 등은 관련 기관의 인허가 진행 및 국가시책, 현장여건, 민원 등에 따라 분양 홍보자료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설별 준공은 입주 예정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평형이나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상의 단위세대와 대형형(좌우대칭 및 세대현관 출입구 방향이 상이)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입별 동·호수 위치는 분양 카탈로그를 참고)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3항제2호의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며, "그 밖의 공용면적" 증감이 있는 변경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본 아파트의 공사 도중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설계와 시공상의 기술적인 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상의 증감이 있거나,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용 면적(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밖의 공용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할 예정이오니 이에 대한 추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또한,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및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하여 추후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확인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본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 계획된 지식산업센터의 감소, 삭제, 용도변경 및 근린생활시설의 증감을 동반한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대당 대지지분이 2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대당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상의 증감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li> <li>• 공급계약서 분실 사유로 공급계약서 재발행 요청 시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및 재발행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 공급면적 표시 방법은 m<sup>2</sup>으로 표기되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됩니다.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조정하여 산출되었으며, 연면적 및 전체 계약 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유의 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라며, 유의 사항 미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li> <li>• 분양 시 제시된 CG,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부대시설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li> <li>• 계약자는 입주 시까지 거주지(현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웰 홈페이지(<a href="https://www.g-well.co.kr">https://www.g-well.co.kr</a>)에서 직접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웰 홈페이지 - 나의분양정보 - 우편물 수령 주소 변경 또는 개인정보 관리]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 대한 제반 통보(계약의 해제통고, 계약의 변동사항 통고의무 등을 포함)는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은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폐문부재,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 포함)도 이와 같습니다.</li> </ul>
<p>건본주택 및 홍보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를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의 각종 인쇄물 상의 조감도, 투시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입면 디자인(저층부 석재, 줄눈, 도장 디자인, BI/CI, 상부층 장식 요소 등), 각종 시설물(조경, 창호, 필로티, 외부 계단, E/V 등), 동선 체계 등이 시행 주체 및 국가 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사인물, 홈페이지, 공급안내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각종 분양 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제작 시점, 여건 변화 반영 정도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각종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 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li> </ul>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 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와 기기 등이 사업승인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은 2025년 8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일부 변경 예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으니 건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건본주택은 84A, 122B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 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 및 부속 철물류, 가구(시스템 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세대 난간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추가선택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추가선택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만 설치되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추가선택품목은 제조사, 형태 및 마감재(하드웨어, 색상, 재질 등) 설치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건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세대 내 주방가구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고, 설치 수납 가구가 상이합니다.
- 건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유도등 및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건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공사 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되며, 건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역시 건본주택 자체의 냉난방 설비로서 본 공사 시 적용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 건본주택에 세대 내 설치된 전기기기 및 설비기기는 실시공 시 제품 사양,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에 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형도의 건축물 외관디자인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품특화 및 인허가 협의에 따라 입면디자인, 주동출입구, 색채, 기단부, 몰딩, 창호(창틀모양 및 색, 색채), 문주, 옥상장식틀, 줄눈, 측벽문양, 부대복리시설,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및 형태, 마감사양, 위치 등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도에 표현된 조경계획(식재, 포장,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옥상조경, 동선 및 선형 등), 각종 시설물(D.A,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실외기 위치 등), 옥외 엘리베이터, 외부계단실 등의 위치와 디자인, 형태, 마감사양, 단지 경계 및 단지내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저층부와 고층부(외벽의 리브 형태 및 지붕 모양 등) 및 부대 복리시설의 색상과 형태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부대복리시설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시공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외부디자인, 조경 마감재 및 식재 등의 수량, 질감, 재질, 색상, 비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모형에 표현된 건축물의 외관디자인 및 조경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품 특화, 인허가 협의 등에 따라 입면디자인, 마감재, 색채, 창호, 옥상 장식물, 문주, 경관조명, 조경계획(시설물, 식재 포함), 마감 사양, 기타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및 위치 등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모형의 세대 창호의 모양 및 사이즈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모형에 면한 인접대지 레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내에 설치하는 구조물(옹벽, 조경석, 계단, 램프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모형에 표현된 단지명칭, 동번호, BI/CI 로고의 위치 및 형태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모형의 태양광패널 및 옥상조경 위치 및 형태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모형에 표현된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합니다.</li> <li>• 모형에 표현된 일부 기계설비(승강기, 방범설비, CCTV, 주차유도시스템 등)의 위치 및 수량은 시공 및 감리 과정에서 최종 확정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입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단지가 속한 덕계공업지구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사업주체인 (주)신영피에프브이제3호의 사정에 의해 변경 및 취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li> <li>• 덕계공업지구 내외 인근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발생, 생활시설여건 미비 및 주거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가 속한 덕계공업지구 및 특별계획구역(사업주체 : (주)신영피에프브이제3호)과 관련한 각종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내용(변경 포함)에 따라 단지 외부 여건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가 속한 덕계공업지구 및 특별계획구역(사업주체 : (주)신영피에프브이제3호)의 기반시설 준공 후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으며, 기반시설 준공 지연으로 인한 입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덕계공업지구 및 특별계획구역 기반시설(도로) 조성계획에 따라 준공 시 아파트 진출입 동선이 계획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덕계공업지구 및 특별계획구역 내 인근의 신설 및 확장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GTX-C, 서울~양주고속도로 등 기타 추진 중에 있는 일체의 개발계획과 단지 인근의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조성 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변경, 취소, 개통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단지 외부에 있는 공원, 녹지(완충녹지 포함), 공공공지, 도로, 교통안전시설 등 기반시설은 별도의 사업주체가 진행한 사업으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조성계획, 세부시설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면적, 폭, 길이, 경사, 레벨, 개소 등이 분양홍보물(모형, CG, 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사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아파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외 인근 토지 및 건축물의 개발 계획은 해당 인허가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조망, 소음,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li> <li>• 기존 도로의 교통소음 및 인근 철도 소음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도시계획도로 준공 후 도로구역 내 진출입로 및 연결된 관로 등 도로점용허가에 따라서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에게 부담될 수 있습니다.</li> <li>•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는 정산하지 않습니다.</li> <li>• 단지 서측에는 18M도로, 북측에는 18M도로, 동측에는 11.5M도로, 남측에는 24~26M도로가 위치 또는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주체인 (주)신영피에프브이제3호의 사정에 의해 변경 및 취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국가기관과 지자체, 혹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항은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남측 주유소용지 및 근린생활용지가 계획되어 있고, 북측 준공업지역과 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공사 및 공장 운영으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li> </ul>

	<p>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공 시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서측에 고가철도(1호선)가 위치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망권, 환경권 침해, 소음,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 사업지 대지경계 외부에 대한 사항은 당 사업지의 사업주체가 변경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주변 일부 산지에는 개인분묘(무연고 포함) 등이 있을 수 있어 주변세대는 주거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향후 미관 등의 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인근 산지 내 개인사유지의 이용 및 개발행위에 관하여 본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므로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반드시 현장을 확인 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주변 논밭 등의 농지, 민가, 창고, 축사 등 기존 시설물이 존치되어 있으며 시설물로 인한 소음 및 냄새 미관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인근 학교는 회천새봄초등학교가 신설 계획되어 있으며, 학교 외 시설로는 단독주택, LPG충전소 및 주유소(예정), 덕계파출소 등이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사업부지 인근에 군사시설과 관련된 초소, 도로차단시설, 기타 군사시설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군사차량 통행 및 정차 등을 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소음, 진동, 약취 등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지 주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사업부지 도로변에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인접동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가 제한될 수 있으며, 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사양, 형태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초등학생은 회천새봄초에 배치할 예정으로 덕계공업지구 및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의 진행도, 학생발생률, 인근학교 배치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천새봄초등학교 신설 및 개교 후 증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전입 현황과 교육부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및 경기도교육청 재정여건에 따라 학교설립이 변경(지연) 될 수 있습니다.</li> <li>• 초등학교 설립 변경(지연)시 배치 대상 학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중학생은 회천중학군, 고등학생은 양주시 관내 고등학교에 배치 예정이며, 학생 배치 여건에 따라 원거리 통학, 중학군(중학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회천중학군은 덕계중, 덕정중, 고암중, 회천중, (가칭)회천4중을 의미합니다.</li> <li>• 초등학생의 적절한 통학거리는 도보기준 30분, 중학생의 적절한 통학거리는 대중교통 30분으로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통학버스를 운행하되, 일체의 경비는 공동주택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운행횟수·운행방법·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등 전반적인 운행사항에 대해 입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운행 할 예정입니다. 특히 통학버스의 운행기간과 운행횟수 등 학생 통학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반드시 사업시행자 단독결정이 아닌 입주예정자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li> <li>•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p>단지</p>	<p>단지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과 달리 본 시공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주차장 출입 및 회차동선 이외 차량정차공간은 비상차량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li> <li>• 소방(소방차량 활동 공간 및 통로, 공기안전매트 등)에 따라 단지 내 도로 및 조경계획과 차량차단기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시 소방차가 단지 내로 진입 후 보수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 부담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 단지 내 소방관련 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조경 식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저층 세대(주동 전체)의 경우 식재 제한에 따른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이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시 관리업체의 입주규정에 따라 사다리차가 이용 가능한 동이더라도 엘리베이터 이사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소음발생 및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시설물 및 이용자, 차량 등 교통수단에 의한 각종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접 동, 인접세대 및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외와 주변도로간 레벨차 및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하여 경계부위 난간 등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단,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는 주변 지형 및 도로 레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위치 이동 또는 추가설치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출입구(보행자/차량 진출입구 포함), 주차장의 위치·규모·동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인근 교통여건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환기를 위한 급배기 D.A (Dry Area) 설치로 인한 악취 또는 수증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과 근린생활시설 및 지식산업센터는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단지외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레벨차, 도로 및 보도 선형, 폭, 시설물의 위치, 규모, 내부구조, 공용부분(동 현관, 지하출입구, 엘리베이터홀 등) 및 부대복리시설의 인테리어, 외부색채, 마감재 계획 등은 실제 시공 또는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안전 관리 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방범용 CCTV는 주차장, 단지 차량 출입구, 놀이터, 엘리베이터 내부 및 아파트 주 현관 출입구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실 시공 시 수량이나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동 저층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로티 및 PIT가 설치되는 세대의 상부 및 인접세대는 통행 동선에 의한 소음 및 시각적 간섭,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주차장 포함)의 구조(구조시스템 및 기초형식 등) 및 흠막이공법은 시공여건 또는 굴착 후 지반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 단지 레벨차에 따른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p>동의 없이 사업주체는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동의 형태에 따라 공용홀의 계획에 따라 세대간의 형평성(엘리베이터홀에서 세대출입문까지의 거리, 창호 설치 유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인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의 창호 설치유무, 창호 크기 및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각 세대 간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면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고 채광 창 위치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비상용/피난용 포함), 계단실 및 샤프트 등으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각 동 최상층엔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설치되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동별 엘리베이터 설치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됩니다.</li> <li>•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전파파,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바람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주동 옥상,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운영·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li> <li>• 주동 옥상 및 옥탑의 디자인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사용이 불가하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li> <li>• 최상층 세대, 외부와 접하는 측 세대는 단열재가 시공이 되나, 타 세대 대비 냉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li> <li>• 주동 저층부 마감은 석재마감(필로티 내부 제외) 및 도장마감 적용 예정이며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외부 마감재 사양 및 경관조명 등은 현장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현장 마감재 사양에 대해 타사 및 당사 기현장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기타 옥외시설물 및 사인물 등은 인허가 과정 및 당사 기준 변경,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설치된 로고의 개수 및 위치, 브랜드 디자인, 명칭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변경을 요구할 수 없고, 일부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 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조경 및 시설물의 경우, 당사 디자인특화계획 및 시공여건, 인허가 등에 따라 디자인, 형태, 크기, 색채,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입체적 단지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홍보물,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 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각 동의 일부 세대는 가로등, 조경등, 경관조명 및 전기선로, 통신선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입니다.</li> <li>•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되었으며, “이동통신중계장치”, “옥외안테나”의 설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영역으로 시공사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li> <li>• 101동, 103동, 104동, 106동, 108동 지붕층 및 지하주차장 2층에는 “이동통신중계장치”가 설치되며, 101동, 103동, 104동, 106동, 108동 지붕층에 기간통신사업자용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이고, 인접세대의 경우 해당 시설로 인한 소음, 전파발생, 빛반사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동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별 배치 및 세대 위치에 따라 층고, 조망, 일조, 프라이버시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지 또는 민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li> <li>• 102동, 108동, 109동 저층세대의 경우 단지 출입구 문주 및 주차장, 기타 시설물의 의해 일조권, 조망권(조망간섭) 및 환경권이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일부동 및 세대는 차량 출입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101동, 102동, 103동의 경우, 서측에 지상철로(1호선)가 인접하여 소음이나 먼지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101동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지붕층에 설치되는 실외기, 탈취기, 냉각탑 등으로 장비의 수증기, 소음, 분진,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101동의 경우 인접세대로의 피난을 위한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있으며, 별도의 대피공간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li> <li>• 103동, 107동, 108동, 109동의 경우 지하에서 가동되는 기계 등으로 일부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101동, 109동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관련 지붕층에 설치되는 설치장비(실외기, 탈취기 등)로 인한 장비의 수증기, 소음, 분진, 진동, 냄새, 시야 간섭, 조망권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101동은 전면(거실측)에 가스입상배관이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li> <li>• 104동~105동 남측 24~26M도로 및 버스정류장 인접, 105동~107동 동측 11.5M도로 인접, 107동~108동 북측 18M도로 인접, 101동~102동 서측 18M도로 인접에 따라 먼지, 소음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5동 남측 24~26M도로변 방음벽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li> </ul>
	부대 복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맘스스테이션, 북카페(작은도서관), 주민회의실, 다함께돌봄센터, 에듀라운지, 키즈플레이라운지,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GX룸, 게스트하우스,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므로 내부 집기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은 출입동선, 출입구의 위치, 출입을 위한 복도, 지하 주차장 방면 출입구 등 일부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경로당, 어린이집 등) 및 근린생활시설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 및 지식산업센터 냉난방 관련시설은 별도 실외기실(공간)을 구획하여 설치됨에 따라 통행 간섭 및 소음, 진동, 환경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설치위치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시공 시 위치, 형태,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중 피트니스센터 및 골프연습장은 지하층에 설치되며, 일부 시설은 환기 및 일조, 채광이 불리할 수 있고, 또한 단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으며, 계단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포함)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및 세부 구획이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세대는 단지 주민 이용과 통행 등에 따른 빛(야간조명 효과 등), 소음, 진동 및 시각적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 및 설비시설로 인한 소음, 진동, 불쾌기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명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장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 동선으로 인해 세대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지식산업센터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지식산업센터 지붕층 일부에는 설비장비(실외기, 탈취기 등)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의 경우 장비의 수증기, 소음, 분진, 진동, 냄새, 시야간섭, 조망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에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1,595세대로,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본 아파트 단지 부대복리시설 내에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양주시에서 해당 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양주시와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련 법규 및 관할 관청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양주시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인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소 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인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입주인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양주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1,595세대로, 본 아파트 단지 부대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55조의2, 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양주시에서 해당 센터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해당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양주시와 체결할 예정이고,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해당 단지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센터의 설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거나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규 및 관할 관청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등을 포함

	<p>한다.), 관할 지자체인 양주시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게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입주민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소 후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는 향후 양주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및 사용료,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주차장은 지하1층~지하3층(공동주택), 지하3층~지하4층(지식산업센터) 별도 구획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출입구는 단지 북측으로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주차대수는 사업계획승인(공동주택 계획주차대수 2,380대)을 따르며, 입주자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주차장 차량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차단기의 기능, 모양, 색상등은 추후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은 동선/기능/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의 주차구획까지의 동선거리, 주동 출입 방법 등이 다르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으며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의 불편함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하 1층, 지하 2층 주차장에 배치하였으며, 접근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거용 주차장은 주출입구 이용 시 지하 1층으로 연결되며, 부출입구 이용 시 지하 2층으로 연결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비주거용 주차장 출입구는 주출입구 진입 후 별도 분리하여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이 설치되며 발전기 등 기타 장비의 주기적인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주차장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차량간 이동 동선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에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관, 배선 및 환 등 설비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 및 환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주차장 이용 시 급배기풍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구로 인해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기용 그릴과 제연환룸의 급배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시공성 및 성능개선 향상 등의 이유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외 도로(주차장 출입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차주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별 주차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설비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운영과 충전시설 이용 방해 등에 따른 민원 발생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수량 및 종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비용(전기요금 등) 부과 및 운영방법 등은 입주예정자가 결정하여야 합니다.</li> <li>• 주차장은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으며, 물고임 또는 미끄럼으로 인한 사고는 본인의 책임입니다.</li> <li>•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 바라며, 주차대수 및 주차 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 진입 부분 및 통로의 유효높이는 지하1층 주통로 유효높이 2.7m, 그 외 통로 2.3m 이상이며, 주차구획면의 유효높이는 2.1m 이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시공 시 각종 배관설치 등으로 일부구간 유효높이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택배차량의 차량통행구간은 유효높이 2.7m(지하1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전동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주차장 및 배수 트렌치는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의 주차장과 E/V홀,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 및 계단실은 대기환경(온도차 등)의 영향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I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사업자의 AI 아파트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필요합니다. 기간사업자의 AI 아파트 서비스는 입주 후 서비스 게시일로부터 3년 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추후 요금은 통신사 내규에 따라 적용됩니다.</li> <li>• 인공지능 스피커는 개별구매 품목입니다.</li> <li>• 기간사업자 인공지능 스피커와 스마트폰 앱은 통신사와 무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li> <li>• 기간사업자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는 유선 인터넷 환경하에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li> <li>• 기간사업자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 중 일부 서비스는 기간사업자 상품(유료) 이용자만 사용 가능 합니다.(IPTV, 지니뮤직 등)</li> <li>• IoT가전 기기는 별도 구매하여야 하며, 기기 연동을 위하여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환경이 제공(통신사 무관)되어야 하고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기간사업자의 계약 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li> <li>•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 할 수 있고, 기간사업자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기간사업자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 내 설치된 조명 일괄 점·소등, 난방, 가스밸브 제어 및 무인택배 등의 상태조화가 가능하며, 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 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난방제어등)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기간사업자의 IoT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합니다.)</li> </ul>
단위 세대 및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각 세대별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없습니다.</li> <li>•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 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li> <li>•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li> <li>•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용 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li> <li>•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실(토출구·점검구 포함)은 단지 외부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외관 마감이 변경, 뜨거운 바람·소음 등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 실외기실 손잡이는 본 공사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실외기실 그릴의 색상은 주동 색체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본 공사시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상이한 실외기 그릴 색상으로 시공될 수 있음)
- 실외기실은 배수구가 설치되며, 에어컨 가동 시 발생한 응축수 및 우천 시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한 관리(청소 등)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 실외기실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는 실외기실의 여건상 계약자가 희망하는 에어컨의 실외기실의 폭, 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해 설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도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에어컨 전문업체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에 유지보수를 위한 문이 설치되었으며, 해당 문의 이용 용도 특성상 실외기실 전면에 많은 공간을 할애하지 않아 협소하며 가전(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의 배치로 이용에 제약 및 불편이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비확장세대 발코니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 설비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장 등 고정 가구장 하부 바닥은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싱크장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 욕실 내 일부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 단위세대 현관 및 팬트리(일부)에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으며, 욕실 당해층 배관에 대한 상세설계가 현장여건 및 효율성 등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다용도실의 마감두께는 원활한 배수 등을 위해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되었습니다.
- 욕실천장 등의 설비, 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세대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시공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일부 해당세대는 배치상 축벽세대 또는 간벽세대의 외벽 단열재 시공 유무에 따라 실외기실, 대피공간의 가로 폭과 바닥면적 실외기실 창호 크기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미확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가스배관은 주방 혹은 주방 다용도실 및 실외기실 내 노출형으로 시공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통해 전기쿡탑을 설치한 세대의 경우에도 세대 내 가스배관은 일부 노출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욕실 직배기 시스템 적용으로 인해 인접세대에서 창문 개방 시 냄새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는 소방 법규에 따라 쿡탑용 자동식소화기 및 관련 기기류가 렌지후드 덕트 내부에 설치되며 소화기 유지관리를 위해 덕트의 탈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및 실외기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및 하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주방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에어컨 냉매 박스, 가스계량기 등은 사업승인 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 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장치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의 조명기구, 홈 네트워크, 세대통합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세대분전함의 경우 가구 및 창고 등 내부에 설치 불가하므로 복도, 침실, 거실 등 노출되는 부위에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 및 개수 등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드레인 및 각종 설비배관, 소화배관은 이웃세대(상, 하, 좌, 우 세대)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벽체(바닥, 천장 포함)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바닥, 천장 포함)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유리, 창틀)의 사양 및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 등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 실내외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 스스로 환기 등의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단열재 설치 요구 및 결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다용도실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다용도실 배수(세탁)배관은 매립하여 설치될 수 있고,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난간과 창호샷시, 유리의 사양 및 형태는 기능 또는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 시공 시 형태,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손잡이, 안전난간 설치여부 등은 안전, 외부입면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크기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프레임 사이즈 및 색상, 창나뉘기,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형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저층부 석재마감 구간 창호크기는 일부 축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욕실가구, 욕실 거울, 욕조, 현관신발장 및 수납장, 파우더장, 침실 불박이장, 주방가구, 주방상부장 등의 뒷면 및 바닥, 천장 등 노출되지 않는 부위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건축마감재 시공(몰딩, 걸레받이 포함)이 되지 않거나 파지타일로 시공될 수 있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에 아일랜드하부장 설치시 해당가구는 고정형으로 이동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단위세대 내 타일, 인테리어 판넬 등 마감공사에 의해 견본주택보다 벽 두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 ABS도어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재(예: 무늬재, 천연석재, 타일 등)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 시 주방상판/측판, 타일 및 석재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디자인과 두께는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으로 인해 디자인이 모델하우스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자와는 무관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 자재의 특성상 실 시공 시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에 가스 배관 설치로 인해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석공사에 쓰이는 사용 자재의 특성상 실 시공 시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강화대리석, 인조대리석, 도배지, 시트지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는 무관합니다.</li> <li>• 「주택법」 제54조 제7항에 의거 동법 동조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li> </ul>
--	--

**13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주택법」제48조의2「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4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이며,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입주지정기간을 60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연체발생 시 연체료 포함)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북카페(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다함께돌봄센터, 피트니스센터, 맘스스테이션 등) 등으로 구성
- 부대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관리서비스의 A/S 센터로 일정기간 사용되며, 입주자는 이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단지 명칭**

- 본 단지의 명칭은 '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간 협의에 따라 단지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지자체의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사업주체는 단지명 변경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주요내용**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513,968,650,000원	제06812025-101-00005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고단열 고기밀 현관문		적용	1등급
창의 기밀성능 (세대 직접외기 이중창)		적용	1등급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적용	환경표지 인증제품 적용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따른 인증제품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한 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주식회사 신영피에프브이제3호	(주)신영	대방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세교로 59-36, 2층 20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14층 1401호(삼성동, 아셈타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11층(마곡동, 대방빌딩)
사업자등록번호	810-86-01507	120-81-52188	128-81-73455

■ 견본주택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61-2

■ 사이버 견본주택

- 주소 : <https://sales.g-well.co.kr/yjdg/>

■ 분양문의

- 1533-0554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에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